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66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피고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2023. 6. 15.

판결 선고2023. 7. 6.

주 문

1. 피고 C과 주식회사 D 사이에 2020. 5. 21. 체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 2020. 5. 21. 제공받은 마스크 원자재 3t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 C과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이의 2020. 5. 21.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위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에 2020. 5. 21. 제공받은 마스크 원자재 3t을 인도하라.

3. 피고 B는 소외 D 사이의 2020. 5. 30.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면제약정을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C과 소외 D 사이의 2020. 5. 21.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위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C과 소외 D 사이의 2020. 5. 21.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위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를 취소한다.

2. 피고 B는 소외 D 사이의 2020. 5. 30.1) 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면제약정을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1) 원고는 2020. 3. 25. D과 KF94 마스크(백색, 대형) 100만개를 물품대금 1,680,000,000원(단가 1,680원/1개), 납품일정 2020. 3. 30.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인 2020. 3. 25. D에 계약금 2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0. D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 44,000개분의 물품대금 79,58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0. 4. 20. D에 위 마스크 공급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323,585,000원(=계약금 252,000,000원+선금금 79,585,000원 - D이 반환한 물품대금 8,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D과 피고 B의 관계

1) D은 2020. 2. 2. 피고 B와 KF94 마스크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성격의 계약금으로 2020. 2. 18.부터 2020. 2. 24.까지 합계 49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2020. 3. 2.부터 2020. 4. 16.까지 D에 대금 합계 16,830,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하였다. 또한 2020. 3. 17. D에 대금 합계 77,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원자재 1t을 공급하고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D은 피고 B와의 마스크 생산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서 받게 될 계약금 반환채권 중 ① 190,000,000원을 2020. 3. 26. E에게, ② 80,000,000원을 2020. 3. 31. F에게, ③ 124,000,000원을 2020. 4. 2. G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일 무렵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4) D과 피고 C은 2020. 5. 21. 피고 B에 G이 작성한 채권포기각서 및 D과 피고 C이 작성한 약속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는 이에 따라 2020. 5. 21. 피고 C에게 마스크 원자재 3t을 제공하였다.

채권포기각서

상기 각서인은 H와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C(위임받는자)이 H에게 마스크 필터 및 부직포, 귀걸이, 코편 3톤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은 포기하겠습니다.

만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적 조치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후일을 확실하기 위해 채권포기각서(위임장 등)를 작성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특약사항

▶I과 H에게 미수채권 124,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을시 마스크 필터와 부직포, 귀걸이, 코편 3톤을 H에게 반환하는 조건

2020년 5월 21.일

위 각서인 G(인)

약속이행확인서

(주)D은 (주)B에 선지급금중 정산받을 총금액 280,670,000원 중 (주)D이 F에게 지급할 금액 80,000,000원을 제외한 200,670,000원을 C에게 담보물로 멤브레인 휠타 3톤을 (주)B에서 받고 (주)B에서 2020년 5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멤브레인휠타에 대한)를 양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확인자 ①(주)D 대표 I

② C

5) D은 2020. 5. 21.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중 18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20. 5. 25.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한편, D 대표이사 I은 2020. 5. 21. 22:07 피고 B 감사 J에게 "A라고 다른 계약자가 양도받을 금액이 2억입니다. 그쪽에서 아마 등기 갈 겁니다. 제가 채권양도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은 "이미 대표님께서 C씨에게 F 채권양도받은 금액 8천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예정금액인 2억 67만원에 대해 휠터 3톤을 내주시라고 해서 지금 차에 싣고 있습니다. 다시 2억을 채권양도하셨다는 것은 그 서류가 저희에게 도착 안 되어서 오늘건으로 처리가 됩니다."라고 답신하였다.

6) 피고 B는 2020. 5. 30.까지 D 또는 피고 C에게 200,67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지급청구

1) 원고는 2020. 6. 19.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2520호로 D로부터 양수한 계약금 반환채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7. 14. '피고 B가 2020. 5. 30.까지 D에 대한 200,67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피고 C은 마스크 원자재 3t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함께 피고 B는 D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합의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는 위 합의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I이 피고 B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채권양도 통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전에 작성되었다'라고 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4.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2. 5.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유일한 재산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처분하고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받은 마스크 원자재 3t을 다시 피고 B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처분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D과 피고 C이 2020. 5. 21. 체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마스크 원자재 3t을 피고 B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마스크 원자재의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피고 C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과 피고 C은 2020. 5. 21. D이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200,670,000원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B가 피고 C에게 마스크 원자재 3t을 제공하고, 피고 B가 2020. 5.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C이 위 원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확인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B는 2020. 5. 21. 위 약속이행확인 약정에 동의하여 피고 C에게 마스크 원자재 3t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2020. 5. 30.까지 D 또는 피고 C에게 200,67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D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B에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위 약속이행확인 약정에 대한 동의의 취소를 구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위 약속이행확인 약정에 대한 동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마스크 원자재 3t을 반환받으면 D에 대한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D이 피고 C과 2020. 5. 21. 약속이행확인 약정을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하는 데 적극 가담하여 D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2020. 5. 21.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알면서 D이 피고 C에게 마스크 원자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해행위에 동의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B가 자신의 채권자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마스크 원자재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채무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급부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급부의 전제가 된 동의 자체가 법률행위로서 독립적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채무자인 D과 수익자인 피고 C 사이의 사해행위에 동의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②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피고 B는 채무자인 D에 대한 채무자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하고, 피고 B의 경우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급부행위를 한 것일 뿐 D의 법률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익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2020. 5. 30.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면제약정을 취소하고 1억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고는 사해행위인 2020. 5. 21.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를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D과의 2020. 5. 30.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면제약정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취지 3항은 피고 B와 D 사이의 위 채무면제약정을 원고의 양수채권금액 1억 8,000만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인 채무면제약정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채무면제약정을 사해행위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B의 2020. 5. 21.자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마스크 원자재를 반환받으면 D에 대한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양수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약속이행확인에 대한 동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D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면제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피고 B의 출재가 있었으므로, 피고 B를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D이 피고 C과 2020. 5. 21. 약속이행확인 약정을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1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용무

판사김광식

판사홍자경

별지

1) 2023.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0. 5.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위적 청구취지 제3항 및 원고가 2023. 6. 15.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관련 별지의 내용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